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1064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현

피 고 1. C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태, 공봉학

변 론 종 결 2022. 5. 10.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528,878원 및 그 중 8,556,347원에 대하여 202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6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E와 피고 C 사이에 2019. 2. 2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9,528,87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E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9,528,8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7. 10. 20. 원고로부터 가계일반 종합통장대출금(소위 마이너스 통장대출) 850만 원을, 만기일 2021. 10. 20., 약정이자율 예약금전국평균금리 + 3.19%로, 연체이자율 9.69%로 각 약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 C은 2020. 4. 26.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2021. 6. 8. 현재 미상환금액은 원금 8,556,347원, 이자 972,505원 합계 9,528,878원이다.

다. 피고 C은 2019. 2. 22.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인 1/2 지분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9.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접수 제15150호로 2019. 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1998. 8. 18. 혼인하였다가 2019. 10. 2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 D에게 증여한 행위는, 비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이전된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를 상당한 정도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되고,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 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담보가치평가액 2억 7,132만 원)에서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F조합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 실채무액 2억 원)를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7,132만 원 정도이고

그 중 피고 C의 지분 가치는 3,566만 원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도 G은행에 1,660만 원, H은행에 49,353,118원(=9,861,475원 + 39,491,643원), I은행에 1,500만 원, 원고에게 9,375,473원(2019. 2. 21.기준) 등 합계액이 90,328,591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② 피고 C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며 피고 D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위자료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피고 D은 자녀도 양육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자녀 양육비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④ 피고 C은 피고 D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D은 주방업무와 홀서빙 등 전반적인 고깃집일을 도맡아 운영하고, 생활비를 아껴쓰며 저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F조합의 대출금 채무도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인 점, ⑥ 피고 C의 신용대출 채무를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별지